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05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김태호 · 박충권 · 조경태
엄태영 · 이양수 · 강명구
김성원 · 유용원 · 김종양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 중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을 “농업·임업·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및 도서지역 의료지원 선박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지역 의료지원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② ~ ㉓ (생 략)

3.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㉓ (현행과 같음)